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거 창 군 의 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5-107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1
2025-108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109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5-110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9
2025-11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4
2025-112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48
2025-113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0
2025-114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2025-115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9
2025-116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2025-117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70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07

발의일자	2025. 08. 22.
발 의 자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의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시 환수를 강행규정으로 두는 등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에 적용하던 규칙을 폐지하고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연구단체 구성과 등록·심의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 (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안 제9조)

마.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안 제10조)

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제출 및 공개 (안 제11조)

사.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안 제12조)

아. 연구단체 존속 기간 및 저작권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7. 28. ~ 2025. 08. 0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8조 거창군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및 변경
2.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400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는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공문 발송
2. 현장 방문 등을 위한 차량 및 인력 지원

제7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위촉직 위원: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윈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의원인 위원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 심사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는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물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제출 및 공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완료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원 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단체 존속 기간 및 저작권) ① 연구단체의 존속 기간은 연구단체의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에 따라 등록되어 운영 중인 연구단체와 시행중인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후의 연구활동 및 예산 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단 체 명 :

2. 대표의원 :

3. 연구목적 :

4. 구성의원 : 명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해체) 신청서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체명		
대표의원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을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산출내역	
기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table>
<tr><td colspan="3">연구단체명</td><td></td></tr>
<tr><td rowspan="4">연구주제
변경내용</td><td rowspan="2">당초</td><td>연구주제</td><td></td></tr>
<tr><td>연구목적</td><td></td></tr>
<tr><td rowspan="2">변경</td><td>연구주제</td><td></td></tr>
<tr><td>연구목적</td><td></td></tr>
<tr><td colspan="3">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td><td></td></tr>
<tr><td colspan="3">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td><td>(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td></tr>
<tr><td rowspan="2">연구활동비</td><td colspan="2">총 액</td><td>금 원</td></tr>
<tr><td colspan="2">산출내역</td><td></td></tr>
<tr><td colspan="3">특기사항</td><td></td></tr>
</table>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계획(변경) 심의결과 통지서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구 분		내 용			
연구회 등록	단체명				
	대표의원				
	등록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부적격사유				
연구과제	과제명				
	과제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경비 지원	총액				
	세부내역	「세부내역 붙임」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의회운영위원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과제 신청서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table>
<tr><td>연구단체명</td><td colspan="3"></td></tr>
<tr><td>용 역 명</td><td colspan="3"></td></tr>
<tr><td>용역 기간</td><td>부터
까지</td><td>용 역 비
소 요 액</td><td>천원</td></tr>
<tr><td>용역 내용</td><td colspan="3"></td></tr>
<tr><td>용 역 결 과
활 용 계 획</td><td colspan="3"></td></tr>
<tr><td>기대효과</td><td colspan="3"></td></tr>
</table>

위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 부

신청인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

□ 연구과제명 :

□ 연구개요

○ 연구목적

○ 연구내용

□ 용역기간 :

□ 과업지시서

○

○

□ 소요사업비

○ 예정금액

○ 산출기초

※ 3종작성 (원가계산서, 설계예산서, 산출기초 :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 적용)

□ 최근 5년간 유사연구사례

○

○

□ 활용계획

○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	
기 타		

신청인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연구용역 심의결과통지서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1조제5항에 따라 귀 단체의 년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의원연구회명	
대 표 자	
연구과제명	
심의·의결내용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table>
<tr><td colspan="2">연구단체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연구활동기간</td><td colspan="2">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rowspan="2">연구
내용</td><td>연구주제</td><td colspan="2"></td></tr>
<tr><td>연구목적</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7">연
구
활
동
비</td><td>수령액</td><td colspan="2">금 원(₩)</td></tr>
<tr><td>집행액</td><td colspan="2">금 원(₩)</td></tr>
<tr><td>잔 액</td><td colspan="2">금 원(₩)</td></tr>
<tr><td rowspan="4">집행내역</td><td>자료수집 및 조사비</td><td>금 원(₩)</td></tr>
<tr><td>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td><td>금 원(₩)</td></tr>
<tr><td>전문가 활동 경비</td><td>금 원(₩)</td></tr>
<tr><td>기 타</td><td>금 원(₩)</td></tr>
<tr><td colspan="2">특기사항</td><td colspan="2"></td></tr>
</table>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08

발의일자	2025. 08. 22.
발 의 자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징계 실효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여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도 운용 통일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적 명시(안 제8조의2)

나.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세부 징계기준 신설(별표 1)

다.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안 별표 2)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 3만원 → **5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44조, 제46조, 제65조, 제66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7. 28. ~ 2025. 08. 0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또는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4. 그 밖에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2(종전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행한 비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겸직 신고 또는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4. 그 밖에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② (생 략)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7. (생 략) ④~⑥ (생 략)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7. (현행과 같음) ④~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⑧ (생 략)	②~⑧ (현행과 같음)

[별표 1]

징 계 기 준(제8조의2 관련)

비위의 유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모욕, 폭언, 갑질 등 기타 품위손상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09

발의일자	2025. 08. 22.
발 의 자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으로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 고문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7. 28. ~ 2025. 08. 0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위촉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기간) ① ---------- ---------- ---------- ----------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10

발의일자	2025. 08. 22.
발 의 자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라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변경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강화 및 심사사항 확대(안 제4조)
나. 공무국외출장 출국 45일 전 계획서 홈페이지 게시(안 제5조)
다. 계획서에 대한 1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안 제6조)
라. 의결 후 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 다시 회의를 거쳐 재의결(안 제9조)
마.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국외출장의 적법·적정성 심의 및 출장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13조)
바. 출장경비 이외 비용지출 관련 사항 규정(안 제14조)
사.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 제9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 2025. 08. 14. ~ 2025. 08. 19.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 :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정부, 거창군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또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2명 이하의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거창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

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table>
<tr><td>출장목적</td><td colspan="6"></td></tr>
<tr><td>출장동기
및 내용</td><td colspan="6"></td></tr>
<tr><td>출장기간</td><td colspan="6">. . . ~ . . .(일간)</td></tr>
<tr><td>출 장 국</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6">출 장 자</td><td rowspan="2">소속</td><td rowspan="2">직급</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성별</td><td rowspan="2">연령</td><td colspan="2">출 장 경 비</td></tr>
<tr><td>금 액</td><td>부담기관</td></tr>
<tr><td>계</td><td></td><td>명</td><td></td><td></td><td>천원</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장명		
출장자 명단	의원	
	직원	
	기타	
출장기간		
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	체재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	
	기타비용	
	총 계	

<table>
<tr><th colspan="9">비용 상세정보</th></tr>
<tr><td colspan="2">총 여행경비
(A+B+C
+D+E+F+G)</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체재비
(A=a+b+c)</td><td colspan="7"></td></tr>
<tr><td></td><td>적용환율</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8"></td><td>구분(금액)</td><td>급지</td><td>호수</td><td>상한</td><td>일수</td><td>인원</td><td>산출금액</td><td>실지급액</td></tr>
<tr><td rowspan="3">일비
(a)</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7">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td></tr>
<tr><td rowspan="3">식비
(b)</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7">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td></tr>
<tr><td rowspan="3">숙박비
(c)</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7">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O / X]</td></tr>
<tr><td colspan="2">준비금
(B)</td><td colspan="4">지급사유:</td><td colspan="3">금액:</td></tr>
<tr><td colspan="2">항공료
(C)</td><td colspan="4">이용구간:</td><td colspan="3">금액:</td></tr>
<tr><td colspan="2">차량임차료
(D)</td><td colspan="4">이용일수:
이용차량:</td><td colspan="3">금액:</td></tr>
<tr><td colspan="2">통역비
(E)</td><td colspan="4">이용내역:</td><td colspan="3">금액:</td></tr>
<tr><td colspan="2">기념품 등
물품구입
(F)</td><td colspan="4">구입목적:
물 품 명:</td><td colspan="3">금액:</td></tr>
<tr><td colspan="2">기타비용
(G)</td><td colspan="4">지급사유:</td><td colspan="3">금액:</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11

발의일자	2025. 08. 22.
발 의 자	이홍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심사에 공정성을 더욱더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6조 제5항 삭제

- 자문위원의 제척 사유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8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7. 28. ~ 2025. 08. 0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④ (생략) 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8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86조의2(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 회피해야 한다.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12

발의일자	2025. 08. 22.
발 의 자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하고자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을 폐지함.

2. 주요내용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7. 28. ~ 2025. 08. 0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13

발의일자	2025. 08. 22.
발 의 자	김혜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1. 제안 이유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라.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안 제5조)
마.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6조)
바. 의회 보고(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전략담당관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7. 30. ~ 2025. 08. 0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이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거나, 군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공모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국가·경상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등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도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사업의 개요와 제5조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군 또는 군의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하고 군의 재정이 필요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이 군과 협의하여 신청하고, 군의 재정이 필요한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모사업의 개요 등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1) 공모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자문 지원

 나. 관련 조문

  1)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지원사유 발생시 예산 확보 예정

작성자 전략담당관 이 남 열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14

발의일자	2025. 08. 22.
발 의 자	이홍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군민 기본 소득 지원에 앞서 기본소득의 타당성 및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창군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사업 지원 및 범위 (안 제4조)

다. 표창수여 근거 마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제1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인구교육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08. 08. ~ 2025. 08.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자립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거창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운동본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동본부에 대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개발, 연구 및 학술 활동, 교류 활동 및 각종 행사
2.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문화, 출판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표창) 군수는 운동본부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협조 및 효과적 수행

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 운동본부 회원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부 지원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사업의 지원 및 범위(안 제 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나.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다. 지원사유 발생 시 예산확보 예정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신 순 화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15

발의일자	2025. 08. 22.
발 의 자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기후환경 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폭염·한파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폭염·한파 취약계층 및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안전총괄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8. 18. ~ 2025. 08.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거창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 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쉬어갈 수 있도록 무더위·한파 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비용
2. 냉난방 장비의 수선 및 식수·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반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물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나. 관련 조문: 군수의 책무 및 폭염·한파 대응 지원(안 제6조 ~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제4조(비용추계 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지원금액이 탄력적이며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고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16

발의일자	2025. 08. 22.
발 의 자	최준규,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건물의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현재의 규정으로는 건축허가 대상이나, 이를 모른 채 설치한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에서 군민을 구제하고 양성화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함
(안 제26조제2항제6호 신설)

나. 어린이집 및 공동주택 부지 내에 설치한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함 (안 제26조제2항제7호 신설)

다.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로 감면함 (안 제42조의3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20조제3항, 제80조제1항제2호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 제115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도시건축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08. 08. ~ 8.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물의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한 시설
   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나. 가중평균 수평면이 1.8m 이하인 경사지붕 또는 높이가 1.5m 이하인 평지붕
   다.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혹은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 외벽이 없는 경량 구조물
   라. 처마 빗물받이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빗물받이 시설을 포함할 것
7.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에 설치하는 높이 3m 이하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단, 외벽이 없는 경량 구조물로 한정한다.

제42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별표 15제13호에 따라 제2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26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건축물의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한 시설 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나. 가중평균 수평면이 1.8m 이하인 경사지붕 또는 높이가 1.5m 이하인 평지붕 다.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혹은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 외벽이 없는 경량 구조물 라. 처마 빗물받이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빗물받이 시설을 포함할 것
<신 설>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에 설치하는 높이 3m 이하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단, 외벽이 없는 경량 구조물로 한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제4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 ③ (생 략)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별표 15제13호에 따라 제2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이행강제금 100분의 1로 감면

나. 관련 조문: 안 제42조의3제4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예측이 불가한 경우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김 현 태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17

발의일자	2025. 08. 22.
발 의 자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필수농자재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3조)

라. 중복지원 제한(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제4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농업축산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8. 11. ~ 2025. 08.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등을 포함하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거창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둘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일 것

제5조(지원 기준 등) ① 필수농자재 지원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

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으로 한다.

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 방법 및 절차는 제7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과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분과에 식량작물담당주사, 축산물 분과에 축산담당주사로 지정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나. 관련 조문 :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작목별 구입비가 상이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수립 후 작목에 따른 사업비용 추계

4. 관련 의견
   가. 거창군 총 농가 수와 지원금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최대 지원
   * 규모별(경영, 소득) 지원 제한 규정 필요

작성자 농업축산과장 백 승 열